

관리비에치금 납부 안내

1. 관리비에치금의 필요성

관리비에치금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기 전 약 45일간의 전기.수도.난방비 등 공과금과 관리직원 인건비 및 청소, 경비, 용역비 등이 해당합니다.

2. 예치금징수의 법적근거(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)

-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(이하 "관리비에치금"이라 한다)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-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에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유자가 관리비·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에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.
- ③ 관리비에치금의 징수·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. 납부방법

가. 계좌 입금시에는 "000동 0000호"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성명으로 입금 시 미납처리 될 수 있사오니 유의 바랍니다.)

나. 관리사무소에서 "관리비에치금 납부확인서"를 받은 후 입주사무실에 가셔서 세대열쇠를 인수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다. 면적별 납부금액

타입	예치금액	타입	예치금액
99A(127.1937㎡)	508,000원	99F(128.4018㎡)	513,000원
99B(127.1937㎡)	508,000원	99G(127.5383㎡)	510,000원
99C(127.4120㎡)	509,000원	109A(140.0414㎡)	560,000원
99E(128.4018㎡)	513,000원	109B(139.6868㎡)	558,000원

예치금 납부 계좌번호 : 농협 351-1370-6431-43

예금주 : 주식회사티애펜피(동탄숨마데시앙)

동탄 숨마데시앙아파트 관리사무소장 [직인생략]

☎ 031 - 372 - 2368